참고문헌

- 류건식,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원 주최 정책세미나, 2003년 10월., pp. 67-120.
- 류건식,「미국기업연금의 운영과 재정제도」,『사회보장연구』 제13권, 1998., p.142.
- 성주호, 「연기금 지급능력 안전성을 위한 장기상각 전략방안」, 『보험 개발연구』, 2004년 3월., pp. 67-96.
- 신기철, 「기업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증권예탁지』,200 3. 4., pp. 1-40.
- 민재성, 김원식, 『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KDI, 1990.11
- E. Philip Davis, Pension Fund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Mutual Funds and the Retirement Market, Fundamentals*, July 1999.
-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and motivation: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 OECD, Draft Guidelines on Pension Fund Asset Management, 2003.11.
- OECD, Supervisory Structure for Private Pension Fund: Survey Analysis, 2003.11.
-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
- 山口修、『確定醵出年金のすべて』、金融財政事情研究會、2003.5.

-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險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 中島富三、『確定醵出年金』、國政情報센터 2002.8.
- 富土綜合研究所(2002), 『企業年金の資産運用』,日本法令,2002년 11월, p. 165
- 厚生年金基金聯合會編,『運用自由化時代の年金基金の資産運用』,東洋 經濟新報社,1999.2.
- 中央三井信託銀行 確定據出年金研究會 著,『企業のための制度設計Gui de, 金融財政事情研究會』, 平成12年 12月.
- 吉原健二,『21世紀の 企業年金』, 東洋經濟新報社, 平成9年 9月.

<부록>

<별첨 I >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관련 설문서

보험회사 : 부 서 : 작 성 자 :

퇴직연금제도가 금년 7월 도입예정으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제 감독은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선진국의 규제감독사례 등을 통하여 향후 연금기금운용시 고려되어야 할 규제감독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규제감독이 보다 정형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탁기관, 근로자, 기업, 감독당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감독체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설문서는 우선수탁기관입장에서 퇴직연금 규제감독방안이 어떻게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가를 사전에 살펴보고자 작성한 설문서입니다.

본 설문결과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봄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설문조사과정에서 얻어진 개별 보험회사의 자료 및 내용 등은 결코 외부에 실명으로 공표하거나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004. 2. 18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내용문의사항 및 설문조사결과는 keon@kidi.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 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	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
	을 해	주십.	시오.								
				아니	니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I −1)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은 수익성중시 규제감독, 안정성중시 규제감독 중 어느 규제감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 ① 수익성중시 규제감독정책 지향
 - ② 안정성중시 규제감독정책 지향
- I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정부의 지나친 규제제도 ② 높은 관리비용
- ③ 복잡한 보험수리적용 ④ 제도와 관계없는 비즈니스상의 사정
- ⑤ 법령준수를 위한 비용증대 ⑥ 빈번한 법령변경
- ⑦ 기타:()
- I-3)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신탁제도에 대한 노사인식부족으로 영미의 지배구조보다는 단순한 계약형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
- Ⅰ-4) 신중한 투자자원칙이 적용되는 확정기여형보다 확정급여형은

오히려 엄격한 투자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5)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기금운용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양적규제(Legal List Rule)가 질적 규제보다 바람직하다().
- I −6) 점진적으로 연금규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 필요 하다().
- I-7) 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의 자산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금회계기준의 제정(FAS 87 등)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 I-8) 자산중시의 리스크관리체제에서 잉여금(부채)중시의 리스크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Ⅱ-1) 법규상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

자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Ⅱ-2) 원칙적으로 충실의무 등의 수탁자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사용 자(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하다().
- Ⅱ-3) 연금기금 운용의 투자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Ⅱ-4) 제도도입초기에는 원금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선 택사항에 원본보장형 상품(법률에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한 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Ⅱ-5) 향후 근로자의 금융상품지식 증대, 영미식 신탁제도의 발전,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대상 및 투자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Ⅱ-6)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Ⅲ-1) 연금운용의 규제완화패턴을 감안하는 경우 확정기여형은 장기 적으로 선관주의(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 화가 요구된다().
- Ⅲ-2)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마다의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 Ⅲ-3)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 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 Ⅲ-4)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충실, 서류의 관리·문서의 명확화, 그리고 운용기관 자체적으로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의 책정 등 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독려대책이 요구된다().
- Ⅲ-5) 자산운용이 자율화되면 기업은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운용기관 및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야 한다().

- Ⅲ-6)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 Ⅲ-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제32조에 의하면 수탁자책임의무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수탁자)는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된 과태료부과수준은 어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매우 높다
 - ②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다소 높다
 - ③ 적정하다 ④ 과태료의 수준이 다소 낮다
 - ⑤ 과태료의 수준이 매우 낮다

Ⅳ.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IV-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장기적으로 어느 지급보증 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소 책임준비금제도 ② PBGC 등과 같은 지급보증제도
- IV-2)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 하다 ().
- IV-2-1)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IV-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현재 근로 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천만원 예금자보호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당하다 ② 5천만원~1억원이 적당
 - ③ 1억원-1억 5천만원이 적당 ④ 1억5천만원 이상이 적당
- IV-4)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은 근로 자의 수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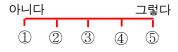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령 제9조 1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9조 2항>

- ① 많이 보장되어 있다 ②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 ③ 잘모르겠다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다
- ⑤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 IV-5)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12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퇴직연 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 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하다().

V. 기타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V-1)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에 신탁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복수의 자산관리기관을 산택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 V-2) 퇴직연금의 업무전문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연금재정의 감독 체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영국의 퇴직연금감독기구 (OPRA) 등과 같이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운용할 필요가 있다

().

V-3) 운용기관의 수탁자책임관점에서 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의 범위(책무)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연금기금의 투자규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고하셨습니다.

<별첨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투자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호주	없음	10%에서 2001년 1월 5%로 하향 (연금 가입자에 대한융자나 금융 지원 금지)	없음	없음
오스트 리아	없음	감독당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10%까지 허용	35%이상자산을 담보부채권, 국채, 유로화표시회사 채에 투자 50%비유로권 해 외자산 투자	없음
벨기에	-10% zone A 이 외지역의 주정 부,지역공공기관 또는 회사 -10% 비상장시 장에서의 주식 -10% -5% 부동산증 서 -5% 파생상품 -5%무보장대출 (1인당1%이하) -10%단일부동산 자산	– free asset의 15%	-모든자산은 벨기에와 EC 영역내에 있어야 함-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은행위원에서 인정받은 금융기관에 한해서투자 가능	없음

		투자 -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캐나다	-10%총장부가 에서 단일 기 업 또는 개인 의 주식, 채권 -5% 단일 자산	-허가(단,전체 자산의 10%로 제한)-증권은 공공거 래를 통해 획 득해야 함	해외증권투자 30%이내	동일회사 의결 권지분 30%이 내
체코	-단일 발행자의 증권은 10% 한도 편입 -단일은행의저 축10% 까지 허용(단일부동 산 또는 유동 산 또는 전체 연기금의 5% 를 초과할 수 없음)	지분에 대한	- 해 외 투 자 는 OECD 국가 의 거래시장 에서 거래되 는 증권에 한 해서 허용	가증권을 해 당회사전체 의 20%를 초
덴마크	-자산종류에 따 라 차이가 있 으나 동일 자 산 에 대 해 선 규제	한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고위험 자산은 70% -부동산 70% -최소80%이상 의 currency matching 규제 (부채의 50%까 지 유로화 표 시자산 보유)	기업 연금의 경우단일기업 에 대해 8 % 이상의 투자 금지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투지	-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핀란드	 - 25% 보증대출 또는 quoted share - 최대 5% 단일기업의 quoted 지분 - 15% 단일 부동산또는 건물 그리고단일자산 또는 부동산회사에 의해보증된 담보대출 	- 25% - 15% 단 일 대상	 유로이외의 통화로 표시한자산에 대해서는 20% 모든자산은 EEA 국가들에위치해야함(단, EEA에준하는 국가 OECD 국가도가능) -5%EEA가아닌 OECD국가자산에 대한 투자의경우 	5% 단일회사의 quoted또는 unqu oted 지분
독일 Pesion -fonds	5% 단일 발행자 30% 정부대출,은행 예금, 담보채권	5% 다수의 기관에 의 해 보증될 경우 10%	70% 유동성자산	5%다수의 기관 에 의해 보증될 경우 10%
Pension kassen	5% 단일 발행자 30%정부대출, 은행 예금, 담보채권	5%	80% 유동성자산 35% EU 증권 25% EU 부동산 10% 비EU 증권 10% 비EU 채권	없음

-				
		투자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헝가리	금지 한 금융그룹내	연기금펀드는 연기금 갹출, 운용과 관련되 는 회사지분을 10% 초과하여 투자 금지	초과 편입금지 전체해외투자 에서 비 OECD 투자는 20% 미만	동일한 발행자 증권을 10%이 상 보유 금지
아이스랜드	초과하여 투 자 금지 -정부보증 증 권 의 경 우 상한선 없음	연기금 관리자 나 스텝에 대 한 대출은 금 지 그러나 연 기금 가입자인 경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대	산 의 경 우 50% 이상 편 입 금지 - 해외투자는 OECD국가의 증권만 허용 (quoted는 50% 까지 unquoted는	연기금은 기업 지분의 15%이 상 편입 금지 (단,연기금을 위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회사이거 나 25%이상의 지분이 단일개 방형편드에 소 유되어 있는 경

	투자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아이스랜드	-동일집단이나 의 증권 의 총자산의 을 총자산의 을 총자산의 하여 투자 증 지 부 보증 지 부 보증 기관 이 경우음 이 의 의 사 채의 이상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연기금 관리자 나 스텝에 대 한 대출은 금 지 그러나 연 기금 가입자인 경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대출 가능	- 해외투자는 OECD 국가 의 증권만 허용되며 이 중 quoted는 50%까지 unquoted는	지분의 15%이 상 편입 금지 (단,연기금을 위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		
아일랜드	없음(단,지급 여력입증시 동 일집단이나 기 관 의 증 권 에 10%의 한도 부여)	제한 없음(단, 회사자산은 지 급여력입증시 전체자산의 5% 한도 부여) - 자기투자가 전체 자산의 5%를 상회할 경우공개의 무	없음	없음		
 일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룩셈부르크	규제 없음 없음	규제 없음 없음	규제 없음 없음	규제 없음 없음		
	D/ L/	n∧ ⊔	I IV I	<u>₽</u>		

	투자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이탈리아	단일발행자증권 은 전체연기금 15%이내로 제 한	허용(동일회사 연기금은 20% 미만,다수의 회 사인 경우에는 30%)	-1/3 이상의 자산을 연금지급통화와 동일한 통화표시자산에 투자-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OECD 국가 증권은 50% 미만-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비OECD국가자산은 5%미만-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OECD자산은투자금지				
멕시코	- 중 앙 정 부 와 중앙은행관련 증권은 기준 에서 제외 - 5 % 신 용 등급 AAA 단일기 관 - 3 % 신 용 등급 AA단일기관 - 1 % 신 용 등급 A - 15% 같은 집 단 에 속해 있 는 기업들	5%까지 가능하 나 특별한 경우 10%	 51%이상의 자산이 물가 연동 산이 물가 연동 전권이어야 함 10% 민간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 -멕시코기업의 외 증권이어야 함 상이어야 함 발행 증권은 기관이 당하 등권은 기관이 당하 등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 				
네덜란드	분산투자원칙 없음	기업주투자 5%이내		없음			
뉴질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투자	<u></u>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노르웨이	-분산투자 의무 -0.5%단일무보 증대출 -한기업과 관련 된 증권 및 자 산에 대한 투 자는 전체 연 기금의 10% 미만	업 주 에 대 한 대출은 담보가 있 어 야 하 며 전 체 자 산 의 20%이하 -연기금은 갹출 기 업 의 주 식 소유 금지	연금을 지급시 사용하는 통화 와 동일한 통화 의 자산에 적어 도 80% 투자	
폴란드	-10% 한기관에 서 제공된 담 보 -5%하나의 같 은 계열 은행 저축 -2% 폐쇄형 단 일투자 펀드투 자(5%개방형) -5% 단일 또는 동일 계열기관 에서발행한 증 권	두사 금시 EPF : -EPF회사증권 에 투자 금지 -EPF회사의 주 주 또는 관련 사 의 증 권 에 5% 이상 투자	해외투자는 5%	OPF:연기금은 단일담보,기관, 폐 쇄 형 드 에 10% 이상 투 자 금지

		투자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포르투갈		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을 근 거로 발행된 증 권 -25% 연기금을	로 표시된 자산 에 투자 -20% 해외 투자 (10% 비OECD 채 권, 3% 비	-단일회사지 분10%이상 보유 금지 -연기금운용 자는 의결 권 지 분 은 20%이상보 유 금지
슬로바키 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스페인	10%단일기관 에 대한 투자	10%이내	-90%자산은공식적거래시장에서 인정 자산에투자-예금 또는 다른시장의 자산은1~15% 이내-OECD회원국 증권은 제한 없음	-단일기관의 주 식 5 % 이 상 보유 금지
	FSR : 없음	FSR 없음	FSR : 없음	FSR : 없음
스웨덴	-IR:5%단일기 관의 주식, 채 권, 등 증권 -5% 단일 부동산 -10% 투자펀드	IR: 없음	IR : 없음	IR : 없음

		E 기 :	¬ ¬i)		
7 12		투자 -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스위스	-10% 단일기 관에 대한 채 권(해외는 5%) 국채,은행,보 험사는 제외 -동일회사증권 에 대한 투 자 10%이내 (해외는 5%)	10%이내	 파생상품은 헤지용도로 제한 기용도로 제한 의기 기의 기의	없음	
터어키	-10% 단일기 관의 금융증 권에 대한 투 자 -한계열기업군 의 금융증권 투자	식의 소유는20% 까지 제한 (10% 이상의 지 분을 가진 주주, 이사회 의장과 임원, 직간접 관 계사의 지분	-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만이 연기 금펀드의 투자 대상 - 일반회사의 증 권은 5~40%범 위에서투자 -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 5%이 하 - 거래소의 주식 투자는 20%이 하 - 국채는 30% 이	기금 편 드 는 5%이상 또 의지분 의결지 는 의결지 그 설로 한 연기관이 편한은 이상의 하여상의 는 또는	

	투자 규제					
국명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 결 권 제한규제		
영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기업주자산 5% 이내	없음	없음		
미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 모든DB형과일 부 DC형 연기 금에서 고용주 의 증권이나 부 동 산 투 자 는 10%로 제한 -이해관계가 있 는 집단 사이의 거래는 제한되 며 위반시는 세 금 공제에서 제 외	미국 법원의 인 정을 받은 자산 으로 제한	없음		

<별첨Ⅲ> OECD주요국의 연금기금 포트폴리오규제

국 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호 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오스트 리 아	50%	2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벨기에	없음(quoted) 10% (unquoted)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캐나다	없음	25% 부동산 또는 자원 자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체 코	25%(quoted)	없음	없음	25%	0%	10%
덴마크	70%	없음 (우량증 권의 경우)	없음 (우량증권의 경우)	70%	없음 (우량증 권의 경우)	없음
핀란드	50% (quoted) 10% (unquoted)	40%	없음	없음	70%(부 동산 및 빌등을 포함하는 담보 대출) 10%(후 순위 대출)	없음
독일 Penssions -Kassen Pensionsf -onds	35% (quoted) 10% (unquoted)	25%	50%	35% (주식포 함)	50% (담보) 10% (그외)	5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아이슬 란 드	50% (quoted) 10% (unquoted)	0%	50% (금융기관) 50% (지방자치단 체)	없음	없음	없음

국 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50%(MPF)	5%(직 접투자) 10%(부 동산투 자펀드 포함)	30%(기업, 지방자치단체) 없음(금융기관) 25% (담보)	50 %	0% (MPF)	없음
헝가리	60%(VPF)	10% 직접 또는 부동산 투자 펀드 포함	상동	상 동	30% (VPF) 5% 펀드가 입자 대출 (VPF)	없음
아일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 음	없음	없음
이탈리아	없음	없음	없음	20 %	없음	20% (유동자산)
일 본	없음	없음	없음	없 음	0%	없음
한 국	40%	15%	_	_		_
룩셈부 르 크	없음	없음	없음	없 음	없음	없음
멕시코	0%	0%	없음(국채, AAA 등급 회사채) 35%(AA 등급 회사채) 5%(A등급 회사 채)	0%	0%	25만페소 \$2,500 또 는이에 준 하는 규모 까지 예금)
네덜란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뉴질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노르웨이	35%	없음	30% (회사채)	30%	1% (무담보 대출)	없음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폴란드 OPF	40% (quoted) 10% (secondary market 또는 비상장 주식)	0%	30%(담보) 15%(지방자 치단체) 10%(회사채)	10% (국립투 자펀드), 10% (폐쇄형) ,15% (개방형)	Equal to investme nt in the shares of the borrower	20%
EPF	없음	0%	5%	없음	상동	없음
포르투갈	50%	45%	60% (회사채)	30%	25% (담보)	30%
스페인	없음 (quoted) 10% (unquoted)	없음	없음	없음	10% (담보보 증이 없는 경우)	15%
스웨덴	FSR :0%	FSR: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가치 의 4/5 또는 2/3또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70% 는 60%	FSR : 없음 (주정부나 그에 준하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을 하여야 함	FSR :0%	FSR:없음 (담보 보증 보이에 는 일이 환보한 대출만 허용)	FSR: 0%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스웨덴	IR: 25% (quoted) 10% (unquoted)	IR: 25%	IR : 없음 주정부채 권 또는 그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 75%다른 경우 10% unquoted	IR : 투자 편드는 직접 소유 자산에 같은 종류별로 합산한 후 그 합이 해당 자산 구성한도를 넘지말아야 함 (25% quoted share)	대출) 10%다른	IR: 75%
스위스	30%	20%				
터키	없음	0%	없음	10%	10%	10%
영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용주 관련 대출 금지	없음
미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용주 관련 대출 금지	없음

<별첨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연금 제도 등 퇴직급여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을 말한다. 4. "퇴직급여"라 함은 이 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의 급여를 말한다. 5. "퇴직연금"이라 함은 확정 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법(안) 6.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가입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사용자의 부담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개인퇴직저축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그 일시금 등을 적립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를 말한다. 9.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한다. 10.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관한 자산관리업무 및 사무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자산관리업무"라 함은 가입자별 계좌 설정, 부담금 수령,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적립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DC형) 12. "사무관리업무"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당해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시행당(반)	· (한)
의 제공,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급여 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 다.(DC형)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건설근로자고용 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 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2장의 퇴직금 제도, 제3장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4장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1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만, 계속근로기간 또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조(제외 대상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 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속근로기간이 1 월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② 제1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 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 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2장 퇴직금제도		
제5조(퇴직금제도의 설정)①퇴 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 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 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 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 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제 조(평균임금)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평 균임금"이라 함은 근로 기준법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 한다.	
③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 (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 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 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 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 조(퇴직보험 등) ① 법 제 5 조 제 3 항 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 직보험 또는 퇴직신 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 보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 는 금융기관(이하 "보 험사업자 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직접 일 시금 또는 연금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 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 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 간이 1월 미만인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 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 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 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 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③ 사용자는 법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6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 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 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 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 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 칙 (안)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8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 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규약의 기재사항)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퇴직연금의 가입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가입자"라 한 다)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것]	제 조(확정급여형퇴직연 금의 요건)①법 제9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 여형퇴직연금의 요건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확 정급여형퇴직연금을 취급 하는 기관(이하 "퇴직연금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 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 며 그 급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 칙 (안)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가입자"라 한 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 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 로기간이 1월 미만인 가입 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 부상황과 급여의 예상액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에 의한 일시금의 액 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 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 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3. 퇴직연금의 급여액에 관한 사항(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하며, 노령연금은 퇴직시 수령하게 될일시금의 액을 기초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 4.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매년말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위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것) 5.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사항(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등이 명시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제 조(가입자 명부) 퇴직 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부 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의 설정)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이 장에서 "퇴직연금"이라 한다)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규약의 기재사항)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도의 설정)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이 장에서 "퇴직연금"이라 한다)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규약의 기재사항)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되적인금사업사 신성에 관한 사항 2.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가입 기간은 퇴직연금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 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격 취득전의 기간을 합산 할 수 있을 것)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4.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며, 그 외에 해당		
사업의 주식 등으로 추가 부담 할 수 있을 것 나. 가입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에 추가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		
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납부할 것. 다만 가입자의 탈퇴시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5.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적립금 의 운용방법 선정을 통하여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		
6.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수 있도록 3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 될 것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나.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원금 보장방법(실질적으로 원금이 보 장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 포함되며, 주식 등 위험 자 산의 대상과 한도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내 일 것		
다. 운용방법별 이익의 예상 및 손실의 가능성 그 밖에 가입자 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 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결과, 운용방법, 그 밖에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 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것		
7.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적립 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될 것)		
8.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 될 것)	제 조(중도인출 사유 및 기간)법 제1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가입자이었던 자의 6월 이상의 실직 2.부양가족의 장기간의 요양 3.주택구입 4.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령연금과일시금이 포함될 것) 10.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11.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될 것)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퇴직연금사업자)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보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공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일반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 1 호및 제2호는 신탁업법제3조의3과 동일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④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자산관리업무의 위탁)사용자는 규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에 충당할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방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2.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 제14조(사무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퇴무관리업무의 일부를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할 수있다.	제 조(자산관리계약)①법 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거입자의 하는 것을 거입자이 로 하는 것일 것 2. 정하는 것일 것 2. 정하고 있 일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을 말한다. 1. 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의 요건을 갖춘 신탁계약을 말한다. 1. 급여에 필요한 시탁계약은 다음 거입자 의 요건을 갖춘 시탁계약을 가입자 의 요건을 갖춘 시탁계약을 의 요건을 갖춘 시탁계약을 가입자 기 등당하는 신탁으로서 가입자 기 등당하는 신탁으로서 가입자 기 등당하는 신탁으로 정하고 있 을 것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5장 개인퇴직저축계좌		
제15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가입자격)퇴직급여의일시금 수령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할수있다.		
제16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취급)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은 자는 개인퇴직저축계좌를 취급할 수 있다.		
제17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가입하 입)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 및 사무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퇴직저축계좌 계약의 요건)제17조의 규정에 의한계약내용은 제11조의 퇴직연금규약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담금의 납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따른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6장 책무 및 감독		
제19조(사용자의 책무)①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20조(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①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할 것 2.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		
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 자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3. 사무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 하여 가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거 나 가입자 또는 당해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 속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		
②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 를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 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서 사용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제21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수하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들어가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징수하거나 질문 또는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퇴직 연금 설정·운영이 법령, 규약 또는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 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③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 2항의 시정 또는 개선명령 에 응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곤 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 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도 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되거 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 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취급정지 또는 다른 퇴직연 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 할 수 있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7장 보 칙		
제23조(수급권의 보호)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 보에 제공될 수 없다.		
제24조(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사용자의 부담금 미납부 또는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된 경우 그이후 시점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하는근로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따라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근로자에게 지급된 적립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증 그 해당금액을 미리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처리)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26조(정부의 책무)①정부는 이 법의 퇴직급여제도가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 등이 원활하게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제27조(업무협조) ①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제도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금융 감독위원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제 8 1조의 2와동 일 한내용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8장 벌 칙		
제29조(과태료)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벌칙)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년 ○월○일부터 적용하되 퇴직금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의 비용부담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급여 및 비용부담)①연 도별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의 급여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1/2 2.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5/6 3.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2/3 4. 200○년 ○월이후 : 30일분 평균임금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 자 비용 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0○년 ○월까지 : 매월 임 금총액의 1/24 2. 200○년 ○월까지 : 매월 임 금총액의 1/20 3. 200○년 ○월까지 : 매월 임 금총액의 1/16 4. 200○년 ○월이후 : 매월 임 금총액의 1/16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제3조(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의 개정)①근로기준법 제34조,제37조제1항중 "퇴직금" 및 제37조제2 호는 삭제한다. ②그 밖에 다른 법에 근 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인 용·준용된 경우에는 이 법 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퇴 직연금제도로 본다. ③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 1호를 삭제한다.	제 조 (이 영에 의한 다른 영의 개정)임금채 권보장법시행령 제9조제 2호의 "근로기준법 제 3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퇴직보험등"을 "이 법 제5조 제3항, 제3 장, 제4장의 규정에 의 한 퇴직금제도 및 퇴직 연금제도"로 한다.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 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 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 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Ⅱ)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생명보험회시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해원 1999.3
-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 2000-1 $\frac{\text{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2000.3}$
-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신동현,배 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 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12
- 2004-1 부유층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기 경희, 2004. 3

■ 연구조사자료 -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Ⅱ)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Ⅲ)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회, 99-1 1999.1
-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 99-2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 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연구논문집

-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회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 시장 전망과 보험화사의 대응 방안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오영수,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 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 보험동향
■ 계간 ———————————————————————————————————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 ·연구보고서(1) ·조사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 ·보험동향(계경 -본원 주최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 -영문발간자.	(0~15회/년) (5~10회/년) (3~5회/년) (3~4회) 간) 각종 세미나 당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 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저 자 약 력

류건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인 『보험수리학』, 『보험이론 및 실무』 의 다수 전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보험감독원 연구위원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e-mail: keon@kidi.or.kr)

이태열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 (e-mail: tylee@kidi.or.kr)

연구보고서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04년 7月 日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오 영 수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 - 4000인 쇄 소 신우씨엔피 (02) 2267-4112 전 화

ISBN89-5710-011-3 93320

정가10.000원